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09호 2015. 08. 17.(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2015-8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2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4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를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이란”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실·과·소·동장 등을”을 “부서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내부윤리활동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과·소장”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장·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담당”을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으로 10인”

을 “장으로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직윤리관리”를 “공직자 자기 관리”로, “세입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10인”을 “세입, 주요 인허가 업무 부서의 장 등으로 10명”으로 한다.

제7조제1호라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자료를”을 “자료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를 “처리독려, 지시사항 입력,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및 승인처리를 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년”을 “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매분기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원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직윤리관리”를 “공직자 자기관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를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서”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를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접근권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접근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8.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명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
-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이 변경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규명 변경
-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변경됨에 따라 법규명 및 명칭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에너지과, 전화 560-4457, 팩스 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명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이 변경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한 관련 부분 수정
- 시행규칙의 시설운영 부분의 일부 추가 및 삭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에너지과, 전화 560-4457, 팩스 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명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
-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이 변경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규명 변경
-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변경됨에 따라 법규명 및 명칭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농 교류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로, “어촌체험 마을(이하 “어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한다.

제2조 중 “어촌체험마을”을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 중 “어촌체험마”를 각각 “어촌체험·휴양마”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어촌체험마”을 “어촌체험·휴양마”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를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구의회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유관기관단체장”을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자 및 기타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및 그 밖의 어촌체험·휴양마”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망·질병·기타”를 “사망·질병·그 밖”으로, “임기만료전이라”를 “임기만료 전이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9조 중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를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u> <u>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어촌경제</u>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u>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u>」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u>어촌체험 마을</u> (이하 “<u>어촌체험마을</u>”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u>어촌체험마을</u>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u>조례</u>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은 <u>어촌체험마을</u>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 “<u>시설</u>”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u>어촌체험마을</u>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u> <u>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u> <u>조례</u></p> <p>제1조(목적) -----<u>농어촌체</u>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농 교류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u>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u>」 제 35조 및 「<u>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u>」 제5조, 제6조-<u>어촌</u>체험·휴양마을--.</p> <p>제2조(적용범위) <u>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u>(이하 “<u>어촌체험·휴양마을</u>”이라 한다)--<u>조례</u>를 따른다.</p> <p>제3조(운영 및 관리) ① ----- ----- -----<u>어촌체험·휴양</u>마----- ----- ----. -----<u>어촌체험·휴양</u>마 을-----</p>

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단체가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생략)

1.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 방안 강구

-----어촌체험·휴양마을-----

-----.

② 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범위-----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현행과 같음)

1. 어촌체험·휴양마을-----

2 ~ 6 (생략)

7.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
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
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
내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
하 “구”라 한다) 소속 어촌체험
마을 관련 공무원, 구의회의원,
세어도 어촌계장, 세어도 거주
주민, 유관기관단체장, 학계 또
는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어촌
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자
및 기타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
-----각 1
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② (현행과 같음)

③ -----
-----어촌체
험·휴양마-----구의회 의
원-----
-----유관기관 단체장-----
-----어
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참여
하는 사람 및 그 밖의 어촌체험
·휴양마-----풍부한 사
람-----
-----.

④ -----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
간-----.
-----해당-----
-----.

⑤ -----사망·질

·기타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
 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
 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
 청장이 요구할 경우 및 재적위
 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 ④ (생 략)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
 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
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병·그 밖-----
 -----입
기만료 전이라도-----.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회의) ① -----
 -연 1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

 -----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따라
예산의 범위-----
 -----.

제11조(시행규칙)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명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명칭이 변경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한 관련 부분 수정
- 시행규칙의 시설운영 부분의 일부 추가 및 삭제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규명 변경
-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시행규칙 시설운영의 마을공동작업장 추가 및 갯벌체험장의 진입로 및 데크 삭제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촌체험마을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종합안내소, 마을공동작업장, 안내판 등
3. 갯벌 체험장

제2조제4호 중 “기타 구청장이 어촌체험마을”을 “그 밖에 구청장이 어촌

체험·휴양마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체험마을”을 “제3조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공보”를 “구보”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2개월전”을 “2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직원”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기타수익금”을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를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탁신청서

1. 시설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2. 신청자 기재사항

법인(단체) 명		법 인 구 분	시설(), 지원()
허가(등록)기관		허가(등록)일자	
허가(등록)번호		법인(단체)목적사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법인(단체) 현 소재지			
재 정 상 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 다. 대표자 이력서
-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4. 약정사항

-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시설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단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구와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일원

시설물 : 마을종합안내소, 마을공동작업장, 휴게쉼터 및 바비큐장, 밭농사체험장, 갯벌체험장, 안내판 등

위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서구청장을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 기간) ① 위탁자는 위 표시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수탁자의 연장신청을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위탁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수탁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화재, 도난, 가스사고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해지조건)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위탁자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해지통보) 위탁자와 수탁자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원상회복) 수탁자가 사용한 시설물을 위탁자에게 반납할 때,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 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예정일) ① 운영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수탁자가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수탁자 :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 점검표

담당자	담 당	과 장

분야별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사항
건 축	건 축 물 조 경 토목구조물		
기 계	냉, 온수기 보 일 러		
전 기	메인 판넬 선로 누전상태		
통신 음향	음 향 설 비 통신, 방송설비		
기 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설운영) <u>어촌체험마을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마을종합안내소, 안내판</u> 2. (생 략) 3. <u>갯벌 체험장 진입로 및 데크</u> 4. <u>기타 구청장이 어촌체험마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u>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u>」의 시행에----- ----- -----.</p> <p>제2조(시설운영) <u>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 각 호</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마을종합안내소, 마을공동작업장, 안내판</u> 2. (현행과 같음) 3. <u>갯벌 체험장</u> 4. <u>그 밖에 구청장이 어촌체험·휴양마을-----</u>

는 시설

제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조
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체
험마을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임대) ① 어촌체험마을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
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
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
아야 한다.

제6조(사용 및 이용제한) 구청장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

제3조(위탁운영) ① -----
---제3조에 따라 어촌체험·휴
양마을-----
-----구보-----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대) ① 어촌체험·휴양마
을-----
-----.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

제6조(사용 및 이용제한)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3.그 밖에-----

정되는 경우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촌체험마을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생략)
3. 보조금 등은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 (생략)
6. 수탁기간 연장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2개월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제7조(수탁자의 의무) -----

---- 각 호-----

-----.

1. 어촌체험·휴양마을-----

-----.

2. (현행과 같음)

3. -----어촌체험·휴양

마-----

-----.

4. 어촌체험·휴양마-----

-----.

5. (현행과 같음)

6. -----

---2개월 전-----

-----.

7. -----따른---

-----.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9조(물품 관리) ① 어촌체험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

② (생략)

제10조(회계 관리) ① 어촌체험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어촌체험마을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어촌체험마을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 관리) ① 어촌체험마을의 수탁자는 보조금의 교부 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물품 관리) 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직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 관리) ① 어촌체험·휴양마을-----
-----.

② 어촌체험·휴양마을-----

③ 어촌체험·휴양마을-----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11조(보조금 관리) ① 어촌체험·휴양마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산 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3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

그 밖의-----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어촌체험·휴양마을-----
-----그 밖의 수익금-----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

④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도·감독) ① -----
-어촌체험·휴양마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공무원-----

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
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
야 한다.

⑤ (생략)

제14조(공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
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
촌체험마을 운영위원장 직인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생략)

③ 공인의 관리는 위원장이 하
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
례」를 준용한다.

-----그 밖의-----

-----.

④ -----
--연 1회-----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인) ① -----

-----.

- 1.-----어
촌체험·휴양마-----

2.그 밖의-----

② (현행과 같음)

③ -----
--그 밖의-----사
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
례」-----.

관계법령 발췌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12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48호(2005. 4. 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 3류5호선, 사업명 :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5호선)
 - 명칭 :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B=6m, L=6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에 비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소로	3	5	6	국지 도로	66	소3-1	소3-2	일반 도로	2005. 4. 4.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 지 조 서

공촌동 소로3-5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40	전	1,117	382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 산동 990-22 임창빌 라 비동 306호	-	-	-	
2	산38-5	임	165	9	국	기획재정부	-	-	-	
3	11-20	도	3,246	107	공	서구청	-	-	-	
4	40-11	임	920	35	이정순외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 로450번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 로35(을지로1가)	근저당	
5	20-1	임	345	11	국	산림청	-	-	-	
6	40-31	전	134	27	공	서구청	-	-	-	
7	20-5	임	123	35	공	서구청	-	-	-	

■ 지 장 물 조 서

공촌동 소3-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공촌동	40전	비 닐 하우스	철골/비닐	3.0x6.0	5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 산동990-22 입장빌라 B/306호	(단위/㎡)
1	인천	서구	공촌동	40전	비 닐 하우스	철골/비닐	4.0x6.0	17	이태순	"	(단위/㎡)
2	인천	서구	공촌동	11-20 도	통신맨홀	콘크리트	D900	1	Kt		(단위/개소)
3	인천	서구	공촌동	40입	수목	유실수	복숭아나무	7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 산동990-22 입장빌라 B/306호	(단위/주)
							산수유	4	"	"	(단위/주)
							앵두나무	1	"	"	(단위/주)
							감나무	16	"	"	(단위/주)
							배나무	5	"	"	(단위/주)
							사과나무	3	"	"	(단위/주)
							대추나무	13	"	"	(단위/주)
							호두나무	1	"	"	(단위/주)
							은행나무	1	"	"	(단위/주)
							매실나무	28	"	"	(단위/주)
							꾸지뽕나무	9	"	"	(단위/주)
							블루베리	9	"	"	(단위/주)
					아로니아	36	"	"	(단위/주)		
					복분자	21	"	"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3	"	"	(단위/주)
							칠죽	15	"	"	(단위:㎡)
							보리수	36	"	"	(단위/주)
							작약	2	"	"	(단위/주)
							국화	1	"	"	(단위/주)
					농작물	도라지	15	"	"	(단위/주)	
들깨	25	"	"	(단위/주)							
고추	15	"	"	(단위/㎡)							
고구마	15	"	"	(단위/㎡)							
쑥갓	15	"	"	(단위/㎡)							
4	인천	서구	공촌동	40-11 입	수목	조경수	측백나무	30	이정순 외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 로450번길24(공촌동)	(단위/주)
5	인천	서구	공촌동	40-11 입	웬스	철골/망	h=1.8	41	"	"	(단위/㎡)
6	인천	서구	공촌동	40-11 입	웬스	철골/망	h=1.8	43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 산동990-22 입장빌라 B/306호	(단위/㎡)